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925
----------	-------

발의연월일 : 2025. 9. 11.

발 의 자 : 한민수 · 이연희 · 박상혁
이해식 · 박균택 · 박해철
송옥주 · 김영호 · 한병도
권칠승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의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당 현수막에 대하여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철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허위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은 국민의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저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가 간 외교 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정당 현수막의 정치 활동 자유 보장이라는 기본 취지는 유지하되,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현수막과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을 포함한 것으로 판정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거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여 민주주의 기반 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8

조 의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8호에 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허위사실을 기재하지 말 것

마.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 포함으로 판정한 현수막이 아닐 것

바. 정치자금법을 준수하여 제작될 것

③ 제1항제8호 중 라목에서 바목까지 위반하여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볼 수 없는 정당현수막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정당에 그 현수막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정당현수막 내용심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현수막에 허위사실이 포함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적용 배제) ①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 적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 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 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 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등도 포함한다.	제8조(적용 배제) ① ----- ----- ----- ----- ----- -----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 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 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 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다만, 현수막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8. ----- ----- ----- -----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u><신 설></u>	<u>라.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u> <u>허위사실을 기재하지 말</u> <u>것</u>
<u><신 설></u>	<u>마.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u> <u>실 포함으로 판정한 현수</u>

<u><신 설></u> ② (생 략) <u><신 설></u> <u><신 설></u>	<u>막이 아닐 것</u> <u>바. 정치자금법을 준수하여</u> <u>제작될 것</u>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8호 중 라목에서 바 목까지 위반하여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볼 수 없는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해당 정당에 그 현 수막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8조의2(정당현수막 내용심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 현수막에 허위사실이 포함된다 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선거관 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7일 이 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